

#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2012.11.28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2년 11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2년 11월 28일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김영하

### 가. 제안이유

동 관리계획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“용강동 복합청사 건립 계획안”에 따른 신축 건물 취득에 대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#### 1) 사업개요

- 2009. 1.15. 용강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기존의 용강동주민센터(용강동259-1)부지와 노인복지시설(용강동115-5) 부지 1,130㎡를 포함한 동 부지내 건물 2개동 1,388.94㎡를 조합측 부지인 사업구역내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(용강동241-1 주변 일대) 신축부지 1,264㎡와 상호교환 함에 따라,

○ 신축부지에 지하1층, 지상3층 연면적 2,800㎡ 규모로 동주민센터, 소규모 노인복지터, 어린이집으로 사용될 복합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임.

2)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 계획

○ 건립 개요

- 사업기간 : 2013. 1 ~ 2014. 9
- 위치 : 용강동 241-1 일대(용강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내)
- 대지면적 : 1,264㎡ (382평) / 동청사 849㎡(257평), 노인복지 시설 415㎡(125평)
- 건 폐 율 : 60%이하 / 용 적 율 : 200%이하 (최대 2,528㎡ : 약 766평), 건축연면적(2,800㎡)

○ 사용용도

- 용강동 주민센터, 어린이집, 노유자시설(대한노인회, 소규모 노인복지센터)

○ 건축규모

소재지	지목	토 지		건 물			토 지 소유자
		공부 면적	규모	용도	건축비		
용강제2 구역주택 재개발사업 지구 내	공공청사 및 사회복지 시설	1,264㎡	계	2,800㎡	6,910 백만원	마포구	
			지하1층 : 700㎡	용적을 제외 (주차장, 기계실 등)			
			지상1층 : 700㎡	어린이집 450㎡, 노인시설(사무실, 경로당) 250㎡			
			지상2층 : 700㎡	동주민센터, 자치회관, 동장실 등			
			지상3층 : 700㎡	소규모노인복지관, 다목적실 (강당), 중대본부 등			
연면적		2,800㎡(동 주민센터 1,333, 어린이집 600, 노인시설 867)					
용도		공공청사, 노유자 시설					

○ 재원별 예산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계	구 비	시 비	기타(조합)	비 고
계	6,910,417	3,563,203	1,695,790	1,651,424	
동 주민센터	3,290,675	1,639,251	-	1,651,424	
어린이집	1,480,804	785,014	695,790	-	
노인시설	소규모노인복지관	1,645,337	645,337	1,000,000	-
	대한노인회 (마포지회)	493,601	493,601	-	-

○ 년도별 예산 확보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계	2013년				2014년		
		소계	구비	시비	기타	구비	시비	기타
총 계	6,910,417	4,900,638	1,553,424	1,695,790	1,651,424	2,009,779		
공사비	5,984,200	4,273,214	926,000	1,695,790	1,651,424	1,710,986		
설계용역비	330,424	330,424	330,424			-		
감리비	544,000	272,000	272,000			272,000		
시설부대비	51,793	25,000	25,000			26,793		

○ 향후 추진일정

구 분	추진일정	비 고
기본설계 및 실시설계	2013. 1 ~ 2013.8	
공사발주 및 착공	2013. 9	
공사완료	2014. 9	

**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**

동 계획안은 용강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의 기존 용강동주민자치 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부지와 상호교환한 신축부지에 지하1층, 지상3층 연면적 2,800㎡ 규모로 동주민센터, 소규모 노인복지센터, 어린이집으로 사용될 복합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서,

용강동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회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, 노인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, 또한 복지시설의 종류 및 형태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며,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**

**8. 기타사항 : 없음**